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84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 안태준 · 오세희 · 박해철

박용갑・염태영・김문수

소병훈 • 이수진 • 정준호

이용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,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.

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,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,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"을 "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2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
- 2.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3. 항공기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소방 및 구난설비를 갖추고,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4. 제5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시설의 관리기준) ① 공항	제31조(시설의 관리기준) ①
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	
•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	
관리 및 <u>기능유지에 필요한 사</u>	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
항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	<u>각 호에 해당하는</u>
는 시설의 관리・운영 및 사용	
<u>등에 관한</u> 기준(이하 "시설관	
리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그	
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제24조에 따른 설치기준에
	<u>적합하도록 유지할 것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
	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	<u>를 할 것</u>
<u>&lt;신 설&gt;</u>	3. 항공기 화재 등의 사고에 대
	비하여 필요한 소방 및 구난
	설비를 갖추고, 사고가 발생
	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
	요한 조치를 할 것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56조에 따른 금지행위를
	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
	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<u>&lt;신 설&gt;</u>	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

	정하는 기준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